위기관리대책회의 20-11

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방안

2020. 3. 25.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I. 수출입·해외진출 기업 긴급 금융지원 ············ 1

Ⅱ.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…………4

I. 수출입·해외진출 기업 긴급 금융지원

I 검토 배경

- □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^{*}으로 수출입, 해외진출 등 우리기업의 대외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피해가 확대되고 자금조달 환경도 악화
 - * 3.11일(현지시간) 세계보건기구(WHO)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(Pandemic) 선언
 - 미국, EU, 중국, 일본을 비롯한 세계경기둔화, 입국제한조치 및 유가하락*으로 우리 수출기업에 부정적 영향**
 - ※ OECD `20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: (`19.11월) 2.9% → (`20.3월) 2.4% 코로나19가 올해 세계경제에 최대 2조 달러의 타격 가능(UNCTAD, 3.9일)
 - * `19년말대비 유가상승률(3.23일): (WTI) △61.7% (브렌트유) △59.0% (두바이유) △63.4%
 - ** 중소기업 70.8%가 코로나19 확산 및 압국제한 등에 따라 수출이 악회될 것으로 응답(중기중앙회)
 - 2월 및 3월 1~20일 수출은 플러스(+) 전환하였으나,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감소*
 - * (2월) 수출 +4.5% 일평균수출 △11.7% (3.1~20일) 수출 +10.0% 일평균수출 △0.4%
 - 현지 사정에 따라 해외공장 가동 중단 또는 조업축소가 우려^{*}되며, 국제유가 하락 등에 따라 중동 지역 중심으로 해외 인프라 수주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
 - * (예) 현대·기아차 미국 및 유럽 내 공장 가동중단, 배터리 등 연관부품 생산도 차질예상, 인도 내 삼성·LG전자, 포스코, 현대제철, 현대차 공장 가동중단 등
 - 또한, 금융시장 불안으로 기업들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우려되는바,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 필요
 - * 신용스프레드(3년만기 AA- 회사채 금리 국고채 금리): (^20.1.2) $0.58\%p \rightarrow (^20.3.24)$ 0.88%p
 - ⇒ 코로나19 사태가 수출입 등 대외경제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
 - ※ 제2차 비상경제회의(3.24일)시 발표된 '금융시장 안정화 방안(100조+@)'의 경영지원 29.1조원 중 輸銀 지원분 8.7조원(신규대출 6.2조원 + 보증 2.5조원) 세부 공급방안임

코로나19 피해 수출입·해외진출기업 긴급 금융지원 방안

─ 〈지원원칙〉 -

① 신속・대규모 지원

 Π

- ② 기존 대출 프로그램으로는 지원이 어려웠던 기업까지 지원
 - ⇒ 총 20조원 지원 (신규대출 6.2조원 + 보증 2.5조원 + 만기연장 11.3조원)

< 기존 대출·보증 프로그램을 통한 신속 지원 >

1 거래 全 기업 만기연장11.3조원 및 신규 자금지원2조원 (13.3조원)

- ㅇ (지원대상) 輸銀 거래 全 국내기업(해외현지법인 포함)
- (지원내용) 6개월내 만기도래 기존대출(11.3조원, 877개사)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(2조원) 지원
- (우대사항) 중소·중견기업 금리우대*, 중소기업 이자납부 6개월 유예 * 기존 적용금리에서 중소기업 0.5%p, 중견기업 0.3%p 차감

② 수출입·해외진출 기업 보증 지원 (2.5조원)

- ㅇ (지원대상) 수출입 또는 해외진출 기업(현지법인 포함)
- (지원내용) 수출입 부진, 신용도 하락 등에 따른 해외사업
 신용보강을 위한 금융보증 제공 및 보증료 우대
- (**우대사항**) 중소기업 0.25%p, 중견기업 0.15%p 보증료 우대

③ <mark>신용등급 없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 (0.2조원)</mark>

- (지원대상) 기존 未거래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 수출입 중소기업*
 * 기존 수은 거래내역이 없어 신용등급이 없으나, 수은 재무등급 5° 이상인 외감 중소기업
- (지원내용) 신용등급 없는 신규거래 중소기업의 경우 **정성평가를** 생략하고 재무제표만으로 신속 우대지원(재무등급별 5~100억원)
- (우대사항) 0.5%p + 대출상품별 기본마진(0.3~0.4%p) 일괄 차감

〈 신규 대출프로그램 도입 〉

4 긴급 경영자금 프로그램 신설 (2조원)

- (지원대상)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존 국내 거래기업 중 수출입 계약・실적이 없거나 대출한도가 소진된 기업
- (지원내용) 평년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한도*로 우대지원
 * (중소·중견) 최근 3년 평균 연매출액 50% 이내, (대기업) 30% 이내
- (우대사항) 중소기업 0.5%p, 중견기업 0.3%p 금리우대

수 수출실적 기반 자금 대기업까지 지원 (2조원)

- * 수출실적을 한도로 필요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으로 현재 중소·중견기업에만 지원중
- (지원대상) 코로나19 피해^{*} 및 혁신성장^{**}, 소재・부품・장비 분야 대기업
 - * 코로나19 피해기업은 `20년 한시지원, `21년부터는 혁신성장·소부장에 한정
 - ** '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(1차관 주재)'의「혁신성장 공동기준」품목 대상
- (지원내용) '20년 2조원 한도 지원(기업별 과거 수출실적의 80%),
 내년초 민간금융 구축정도 등 점검하여 계속 운영여부 재검토

Ⅲ 향후 추진계획

- □ 만기연장 등 **기존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은 즉시 시행**하고, 신규 프로그램의 경우 감사원 협의 등을 거쳐 **신속히 지원**
- □ 필요시 적정 BIS비율 등 輸銀 재무건전성 확보위한 소요비용 보전방안 검토 * `19년말(잠정) BIS비율 14.48%

Ⅱ.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

1 신청 현황

□ 생산량·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유급 휴업·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(휴직) 수당의 일부를 지원

<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현황 (3.20.기준, 사업장수) >

구분 (개소)		규모별 분류				주요 업종별 분류					
	합계	10인 미만	100인 미만	100 ~299	300인 이상	제조업	도소매	숙박 음식	설 시입 사리() 사관() 사관()	아 디	기타
신청	17,866	13,695	3,918	182	71	1,831	2,899	2,321	3,275	2,823	4,717

※ '19년 1,514개소, 669억원 지원

2 그 간의 조치상황

- □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상향
 - **1**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("20.1.29.~)
 - * 매출액 15%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'고용조정이 불기피한 사업주'로 인정
 - 2 휴업(휴직) 수당에 대한 지원수준 한시적 상향
 - * '20.2.1.~7.31. 기간 동안의 휴업·휴직: <중소기업 등> 2/3→<u>3/4</u>, <대기업> 1/2→**2/3**
 - ** 특별고용지원업종(3.16.~9.15.): <중소기업 등> 3/4 → **9/10**, <대기업> 2/3 → **2/3~3/4**
- □ 운영 개선
 - 소규모 서비스업종의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한 <u>서류 간소화</u>
 - * 10인 미만 사업장의 인정 서류 범위 확대 등
 - ② 급증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<u>인력 집중 투입</u>
 - ❖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5%의 자부담이
 있어 소상공인, 중소기업 등이 고용을 유지할 유인책으로는 부족
- ➡ 근로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 방안 마련이 중요

3 추가 지원방안(안) 및 향후계획

- □ 추가 지원방안(안)
 - ◆ 코로나19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 → 모든 업종에 대한 지원 수준을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지원비율(9/10)로 한시적 상향
 - (지원비율) 중소기업 3/4 → 9/10, 대규모기업은 동일(2/3)
 - * 전체 신청사업장 중 300인 미만 사업장 99.6%
 - (기간) <u>'20.4.1.</u> ~ <u>'20.6.30.(3개월)</u> 동안 **휴업 또는 휴직**하는 경우
 - * (예시) 고용유지조치를 '20.3.1.~'20.5.31.까지 실시한 경우(중소기업 가정)

 나 ①('20.3.1.~'20.3.31.) 휴업수당의 **3/4 지원** ②(4.1.~5.31.) 휴업수당의 **9/10 지원**
 - (소요예산) 신청증가 추이와 지원비율 인상을 고려하면 4,000억원 소요
 - * 2009년 세계 금융위기로 3,102억원 집행

< 고용유지지원금 소요 예산 >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′19년	′20년						
丁 正	192	합계	기존	1차	2차(안)			
예산규모	71,942	500,389	35,089	65,300	400,000			

- (조치 필요사항)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개정 및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
- □ 향후 추진계획(4월 중)
 - (법령)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항 개정
 - (예산) 고용보험위원회 심의 →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